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5.

발 의 자 : 서영석 · 강준현 · 윤준병
허종식 · 진성준 · 김주영
이해식 · 김태년 · 최혁진
한정애 · 소병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로 인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2072년에는 47.7%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며, 그 밖에 민간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.

그런데 성년후견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, 민간신탁상품 또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되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이 있는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,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

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등).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공공신탁사업) ① 국가는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그 후견인과의 계약(이하 이 조에서 “신탁계약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신탁재산의 관리·운용 및 지출 등을 위한 사업(이하 “공공신탁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공공신탁사업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·관리·운용, 신탁계약의 기재사항 및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신탁사업에 따른 수탁자의 권리·의무, 신탁계약의 변경·종료 등에 관하여는 「신탁법」에 따른다.

제30조의3(시범사업의 실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신탁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신탁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자 및

수탁자 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·실시지역·실시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국민연금법」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공공신탁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공공신탁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0조의2(공공신탁사업) ① 국가는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그 후견인과의 계약(이하 이 조에서 “신탁계약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신탁재산의 관리·운용 및 지출 등을 위한 사업(이하 “공공신탁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② 공공신탁사업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·관리·운용, 신탁계약의 기재사항 및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신탁사업에 따른 수탁자의 권리·의무, 신탁계약의 변경·종료 등에 관하여는 「신탁법」에 따른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30조의3(시범사업의 실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신탁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</u>

第53條(權限의 위임・委託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・道知事は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市・道知事 또는 市長・郡守・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市・道知事 또는 市長・郡守・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

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신탁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자 및 수탁자 등에게 행정적・재정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・실시지역・실시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3조(권한의 위임・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・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

<u>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.</u>	<u>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③ <u>보건복지부장관은 「국민연금법」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공공신탁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공공신탁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